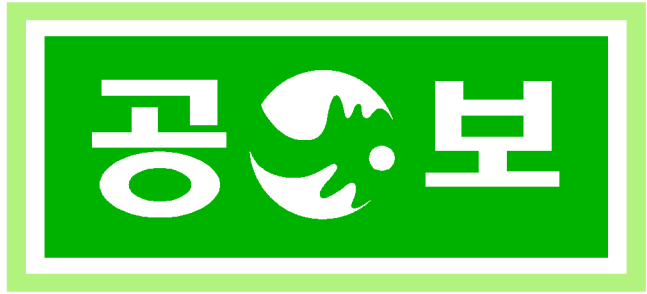


# 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보	기 관 의 장



**제 810 호 2013. 4. 15(월)**

## 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-63호[도로명주소 고시] ..... 2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-64호[도로명주소 폐지 고시] ..... 3

## 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-372호[현수막지정계시대 관리 민간위탁 계획공고] ..... 6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-380호[울산광역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안 입법예고] ..... 9

회 관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   편집: 기획홍보실(☎241-7124 행정7124)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 - 63호

## 도로명주소 고시

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3년 4월 15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1길 24-2(호계동)외 3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참조)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3. 4. 15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###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

순번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부여시유	도로명 고시일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884-5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1길 24-2(호계동)	2013-04-15	호계시장에 위치하여 도로명 부여하였다.	2009-08-20	
2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35B 11L, 35B 12L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8길 9(진장동)	2013-04-15	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12-27	
3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53-19	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9길 7(호계동)	2013-04-15	기존 희망길의 수상명사이므로 도로명사용으로 부적합하고 동대로에 분기하므로 일련번호 방식에 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9-08-20	
4	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신385	울산광역시 북구 성골길 4(어물동)	2013-04-15	기존 자연마을인 성골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 부여하였다.	2004-08-09	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3 - 64호

##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3년 4월 15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복구 명촌7길 26외 9건

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 사유
(별지참조)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청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3. 4. 15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.

##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

연번	도로명주소	종전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사유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명춘7길 26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춘지구 119B 6L	2013-04-15	멸실	
2	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177-7	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421-2	2013-04-15	멸실	
3	울산광역시 북구 새장터5길 3-1	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동 138-7	2013-04-15	멸실	
4	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로 16	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880	2013-04-15	멸실	
5	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882	울산광역시 북구 당사동 484	2013-04-15	폐지	
6	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447-7	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316-3	2013-04-15	폐지	
7	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772-2	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151-16	2013-04-15	폐지	
8	울산광역시 북구 책골길 23-9	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691	2013-04-15	폐지	
9	울산광역시 북구 중리8길 16-4	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동 389-1	2013-04-15	폐지	
10	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1119-2	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316-3	2013-04-15	폐지	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3 - 372호

## 현수막지정계시대 관리 민간위탁 계획 공고

「울산광역시 복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」 제19조 규정에 의거 현수막지정계시대 관리 민간위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4월 11일

### 울 산 광 역 시 복 구 청 장

□ 근거규정 : 「울산광역시 복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」 제19조,  
「울산광역시 복구 사부의 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□ 위탁기간 : 2013. 5. 1. ~ 2015. 4. 30.

□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

-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소재 옥외광고업 및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아래 각 호의 인력 및 시설·장비 등을 갖춘 관리 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
  - 「국가자격기술법」에 따른 옥외광고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1명 이상이 포함된 정규직 종업원 3명 이상
  -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
  - 작업차량, 사다리, 카메라 및 기타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장비
  - 손해배상 책임배상 등 보험가입(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·단체에 해당)

#### □ 신청서 접수

- 신청기간 : 2013. 4. 11.~4. 18. (1주간)
- 신청장소 :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
- 신청서류
  - 현수막지정계시대 위탁관리 지정 신청서
  - 옥외광고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
  - 사업계획서
  - 인력 및 기술자격 현황(자격증 사본)
  -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
  - 장비보유현황 등 그 증빙서류

#### □ 수탁업체의 선정기준 및 방법

-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 중에서 관리 및 운영 경험이 풍부하거나 관리능력이 있는 업체 우선 선정
- 위탁업체는 1개 업체로 지정하되 울산광역시북구청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

#### □ 수탁자의 임무 및 준수하여야 할 사항

- 수탁자는 현수막 표시신고의 접수·처리 및 계시대에 신고된 현수막을 설치 및 철거하여야 한다.
- 수탁자는 현수막 표시 신고에 따른 신고수수료(도로점용료 포함) 및 민원서류 접수를 대행하여야 한다.
- 수탁자는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매일 1회 이상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지정계시대의 청결유지 및 잔재물을 제거하여야 한다.
- 수탁자는 게시된 현수막의 관리 및 신고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미신고된 불법현수막을 철거하여야 한다.
- 수탁자는 훼손된 시설물을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.

#### □ 기타사항

- 기타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(☎241-8032)로 문의



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3 - 380호

### 울산광역시 복구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안 입법예고

『울산광역시 복구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』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3. 4. 15 .

## 울 산 광 역 시 복 구 청 장

### 1. 개정이유

안전행정부 예규 제415호 “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”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, 안전행정부의 개정예규 표준안에 의하여 「울산광역시 복구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」을 일부개정 코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일부 불합리한 수의방식의 금고지정 기준 삭제(제2조)

○ “금고지정 및 운영규칙” 제2조제2항 3호·4호“를 삭제.

#### 나. 금고 지정시 경쟁제한적 평가요소 조정 등(제3조 별표1)

○ 기타 용어정의 및 금고지정 평가항목, 배점기준, 평가방법 등을 안전행정부 예규 및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근거로 하여 규칙개정에 반영

#### 다. 협력사업비 세입조치 의무화 기준신설(제9조)

○ 지정금고에서 제공하는 모든 협력사업비는 투명성확보를 위해 세입조치하도록 명문화 함.(국민권익위 권고)

### 3. 의견제출

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나 개인은 2013년.5월

6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 세무과, (전화:241-7501, 팩스: 241-7509)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#### 4. 참고사항

「울산광역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안과 신·구조문 대비표 등은 인터넷홈페이지게시 및 우리구 세무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.

[붙임 1]

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

**울산광역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**

울산광역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(행정안전부 예규)”을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”으로 한다

제2조제2항 중 “제3호 및 제4호”를 삭제한다.

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.

5.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의 협력

제4조제9항 중 “ 「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”를 “ 「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로 하고, 제10항 중 “지방세과장”을 “세무업무 담당과장”으로 하고, “금고업무 담당주사”를 “세정업무담당주사”로 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

제9조(구와 금고간의 협력사업 추진) ① 금고 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(단, 비현금성 협력사업 제외)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

②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비현금성 협력사업(물품 등)은 「공유재산관리법」 등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.

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이 규칙 시행 전 지정된 구 금고 지정에 관한 사항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.

#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」(행정안전부 예규)에 따라 울산광역시북구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, 각종 세입금의 수납,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(이하 “금고”라 한다)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금고의 지정) ① (생략) ② (생략) 1 ~ 2 (생략) 3. <u>울산광역시의 금고 금융기관을 구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,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,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</u> 4. <u>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고자하는 경우로서,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안정성, 업무관리 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. 다만,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.</u> ③ (생략)</p> <p>제3조(금고지정의 평가기준) ① (생략) 1 ~ 4 (생략) 5. <u>지역사회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</u> 6. <u>중소기업 및 저소득층 대출 실적계획</u> ②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- - - - - 「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」 - - - - -</p> <p>제2조(금고의 지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 ~ 2 (현행과 같음) &lt;삭제&gt; &lt;삭제&gt; &lt;삭제&gt;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금고지정의 평가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 1 ~ 4 (현행과 같음) 5. ----- <u>구와의 협력</u> &lt;삭제&gt; ② (현행과 같음)</p>			

현	행	개	정	안
		제4조(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)		
제4조(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)		① ~ ⑧ (현행과같음)		
① ~ ⑧ (생략)		⑨		
⑨	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「울산광역시 복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			----- 「울산광역시 복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-----
⑩	위원회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, 간사는 지방세과장으로,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주사로 한다.	⑩		----- --세무업무 담당과장--세정업무 담당주사-----
제9조(구와 금고간의 협력사업 추진) <신 설>				
		제9조(구와 금고간의 협력사업 추진) ①	구와 금고간의 협력사업은 금고 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(단, 비현금성 협력사업 제외)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	
		②	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비현금성 협력사업(물품 등)은 「공유재산관리법」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	

<별지>  
[별표 1]

###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안

항 목	세 부 항 목	배 점 비고
계		100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	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----- <b>(10)</b> - 국외평가기관(6점) - 국내평가기관(4점) 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----- <b>(22)</b> - BIS 자기자본비율 (안정성, 7점) ※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(안정성, 7점)로 평가 - 고정이하 여신비율 (건전성, 7점) - 자기자본이익율 (수익성, 6점) - 대손충당금적립율 (건전성, 2점) ◆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산형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으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(금감원, 새마을금고중앙회 등)의 기준을 따름. ◆ 금융감독원,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.	32
2.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	가. 정기에금 예치금리----- (6점) 나. 공금예금 적용금리----- (5점) 다. 자치단체 대출금리----- (4점) 라. 수시입출금식예금금리----- (3점)	18
3. 지역주민이용 편의성	가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----- <b>(8점)</b> 나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----- <b>(7점)</b> 다.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(5점) ※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	20
4. 금고업무 관리능력	가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-- <b>(7점)</b> 나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----- <b>(5점)</b> 다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----- <b>(5점)</b> 라. OCR센터 운영실적 및 계획----- <b>(3점)</b>	20
5.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	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----- <b>(5점)</b> 나. 구와의 협력사업----- <b>(5점)</b> ※ 협력사업 추진계획 3점, 실적 2점 부여 ◆ '지역사회에 대한 기여', '구와의 협력사업' 평가는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운영, 평가기준은 형평성 등을 고려 하여 구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배점.	10

<별지>  
[별표 2]

##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

### I. 일반원칙

1.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차감 배점하여 평가하고,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·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.
2.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,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소 0.2점 구간 이내로 하여 균등하게 배분하며 세부항목간에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한다. 다만, 평가항목 2(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)와 평가항목 5(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)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최대 0.5점에서 최소 0.1점 구간내로 한다.

### II.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

#### 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

##### 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

- 평가기준 :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·평가(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(10점)을 평가)

##### ◦ 평가방법

-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,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·평가하여 배점
- 다만,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수준이하일 경우 0점처리 가능

##### 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

-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·평가하여 배점하되,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·확인
- 다만, 금융기관의 경영지표 현황이 적정수준이하일 경우에는 금고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가능

-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
  - BIS 자기자본비율(안정성)
    - ※ BIS 10퍼센트 이상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만점처리 가능
    - ※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(안정성 7점)로 평가.
  - 자기자본이익율(수익성)
  - 고정이하여신비율(건전성)
  - 대손충당금 적립율(건전성)
    - ※ 금융감독원,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 
검사기준에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

## 2.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

- 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
  -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·평가한 후 배점
- 나. 공금예금 적용금리
  -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배점
- 다. 자치단체 대출금리
  -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·평가한 후 배점
- 라.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
  -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·평가한 후 배점

## 3.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

- 가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
  -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,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(전자납부 등) 증진 방안,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·평가한 후 배점
- 나.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
  -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한 후 배점



다. 관내 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

- 구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및 무인점포, 365코너 등의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하여 배점
  - 관내 지역에 설치된 적정 점포수가 미흡하면서도 금고예금 유치목적으로 경쟁에 참가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 0점처리 가능
- ※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**

**4. 금고업무 관리능력**

가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

- 금고관련 세입·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(안)을 제출받아 비교·평가한 후 배점

나.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

-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·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한 후 배점

다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

-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·평가한 후 배점

라. OCR 센터 운영실적 및 계획

- OCR 센터 운영실적 및 처리능력 평가후 배점

**5.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**

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

-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,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에 기여한 실적 등을 비교·평가한 후 배점

나. 구와의 협력사업

- 구와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한 실적이나,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한 후 배점
-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협력사업 등을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한 후 배점